



[조세심판 결정례]

개업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면서
수령한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신고조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 여부

글. 조세심판원



사 건	조심2015전5000 (2016.3.25.)
세 목	종합소득세
결정유형	경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고보조금 2009년 수령분 **원 및 2010년 수령분 **원을 각 일시상각충당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가. 청구인은 OO시외버스공용정류장을 운영하면서 OO시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 **백만원(“쟁점국고보조금”)과 자비 **백만원으로 2010년 OO시외버스공용정류장을 리모델링하였고, 리모델링한 건축물을 사업용자산으로 계상한 후 2011년부터 매년 감가상각비(정액법) **원을 계상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사건 개요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쟁점국고보조금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2009년 및 2010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년 귀속분 **원 및 20△△년 귀속분 **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다. 청구인은 위 세무조사가 종료된 후에 쟁점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여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적법한 신고로 보지 아니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원을 감액하여 이를 경정하여야 한다.

가. 처분청은 법인세의 경우 명문규정이 있어 신고조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이 가능하고,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쟁점국고보조금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설정하도록 허용한 취지(과세이연을 통한 국고보조사업의 지원효과 극대화)에 비추어 종합소득세의 경우만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나. 회계처리방법은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므로 법인만 신고조정이 허용되고 개인사업자는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3

처분청 의견

가. 법인세의 경우 명문규정이 있어 신고조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나,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나.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일시상각충당금의 장부계상이 가능하기에 그러한 특례를 「소득세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인사업자의 국고보조금 사용과 관련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을 통한 필요경비 산입은 결산조정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다. 현행 규정상 신고조정을 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는 선택에 의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을 결산조정하거나 통상의 방법으로 감가상각하게 되는바, 청구인은 후자의 방법을 선택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관계법령 등

가. 소득세법(2008.12.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된 것)

제32조【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취득 또는 개량할 목적으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이하 “국고보조금”이라 한다)을 받아 당해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국고보조금을 받은 날 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고정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국고보조금의 필요경비계산】① 법 제32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금액은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개량에 소요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1. 감가상각자산은 일시상각충당금

다.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준비금 등에 대한 손금계상의 특례】①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은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그 적립금을 치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그 적립금을 치분한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내국법인이 이 영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하고 이를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손금에 산입한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후단 생략)



5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가 종료된 후에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09년 귀속분

쟁점국고보조금 중 2009년 귀속 **백만원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동시 산입(조정계산서에 반영)하여 수정신고

● 2010년 귀속분

다만, 쟁점국고보조금 중 2010년 **백만원을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동시 산입(조정계산서에 반영)하여 수정신고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국고보조금의 일시상각충당금 설정과 관련하여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5조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98조제2항에 신고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으나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그러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신고조정에 의하여 국고보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고정자산은 감가상각에 의하여 손금화되는 것이 원칙임에도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일시상각충당금의 설정 및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취지가,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기본적 지출에 충당할 국고보조금을 과세소득에 산입하여 일시에 과세하게 되면 그 보조금 중 일부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지금취지인 고정자산 등의 취득에 지장이 초래되므로, 동 보조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일시에 징수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추후 당해 고정자산 등에 대한 감가상각비와 상계처리함으로써 과세를 이연시키는 효과를 달성하려는 데 있으므로,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법인과 개인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국고보조금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등을 규정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의 관련 조문은 그 체계 및 내용이 거의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법인의 경우처럼 개인사업자도 신고조정에 의한 일시상각충당금 설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종합소득세는 연도별 쟁점국고보조금 상당액을 일시상각충당금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